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

3. 주요내용

가. 항공방제업 신설에 따른 영업범위 등 마련(안 제3조)

- 1) 개정 농약관리법 제3조의2(‘21.6.15. 개정, ’23.1.1. 시행)에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영업 범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항공방제업자에게 매년 안전사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1조의3 등)

- 1) 개정 농약관리법 제23조의4(‘21.6.15. 개정, ’23.1.1. 시행)에 따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 2)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 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 2)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

라. 기타(안 제22조, 별표 3)

- 1) 개정 농약관리법 제24조(‘21.6.15. 개정, ’23.1.1. 시행)에 유통단계 농약의 단속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
- 2)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누적회차 적용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범위)”를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2제1항”을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농작물의 재배 또는 생육을 위하여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2항(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법 제5조제1항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3제6항”을 각각 “법 제23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한다.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정보

제21조의3을 제21조의5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1조의3)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5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촌진흥청·산림청의 3급·4급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농약 관련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농약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농약등의 제조업자·판매업자·방제업자·사용자단체의 임원

② 법 제23조의4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분쟁사건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1/3 이상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⑧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조사 등의 운영을 위해 조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지명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조사

2. 분쟁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 기준의 마련

3. 그 밖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21조의4(피해조사 등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을 지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원 및 제21조의3제8항에 따라 조사관을 지명하는 경우 해당 조사관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를 발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은 농약피해 조사가 완료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서류·현장·시험결과·의견 청취 등 농약피해를 조사한 객관적 사실
2. 제1호에 따른 조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상 수준 등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1항) 및 제6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2항”을 각각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를 “검사(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수리
2. 법 제5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지위승계 신고 수리
3. 법 제6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 신고 수리
4. 법 제7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및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고시 및 운용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교육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검사, 시료·시험용 제품 수거
7.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 대한 수거·폐기 실시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농약등의 관리
사항 보고 요구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지위승계 신고

11.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청문

12. 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
호·제3호·제5의2호·제6호·제7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수출입식
물방제업자에 한정한다)

13.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수리

2. 법 제5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지위승계 신고 수리

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 수리

4.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및 항공방제업관리규정 고시 및 운용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 교육
6.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검사, 시료·시험용 제품 수거
8.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수거·폐기 실시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농약등의 관리사항 보고 요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1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13.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지위승계 신고
14.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청문
1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제3호·제5의2호·제6호·제7호(항공방제업자에 한정한다)

나. 법 제40조제2항제8호

16. 제21조제4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고시

17.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8.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 또는 위탁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출 입식물방제업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다. 법 제5조제3항(법 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 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1호	50	75	100
라.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2호	50	75	100
마.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3호	50	75	100
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의 가 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 우	법 제40조 제2항제3호 의2	50	75	100
사. 방제업자 외의 농약등의 사용자가 법 제2 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 여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4호	50	75	100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5호	50	75	100
자.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사용기준 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 나 추천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차.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 용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300	400	500
카.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 6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 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 2항제5호의 2	50	75	100

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의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6호	50	75	100
파.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7호	50	75	100
하. 법 제23조의7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문서·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 제2항제8호	50	75	100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립식물검역기관) 「농약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 관”이란 <u>농림축산검역본부를</u> <u>말한다.</u>		<삭 제>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 범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수출 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의 영 업범위는 수출입식물검역과정 에서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 방제업의 영업범위) ① 「농약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 -----.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항 공방제업(이하 “항공방제업”이 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농작물 의 재배 또는 생육을 위하여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사용 하여 행하는 방제업으로 한다.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 법 제 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 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검역
본부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
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게 농
약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
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외의 농약
등의 사용자에게 농약등의 안전
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
역본부장 및 농촌진흥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
조의3제6항에 따라 농약 안전관

-----.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 법 제5조제1항의 수출입식
물방제업자등(이하 “수출입식
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
-----.

②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
-----.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① ----- 법 제23조
의3제7항-----

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에 관한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1. 2. (생략)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 판매업의 등록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정보

<신설>

2.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3. ~ 5. (생략)

<신설>

-----.

-----.

1. 2.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23조의3제7항-----

1. ----- 등록 -----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정보

2.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3.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
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농촌진흥청·산림청의 3
급·4급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
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
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
던 사람

4.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농약
관련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농약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농약등의 제조업자·판매업
자·방제업자·사용자단체의
임원

② 법 제23조의4에 따른 농약피
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
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분쟁사건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1/3 이상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신 설>

⑧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조사 등의 운영을 위해 조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지명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 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조사

2. 분쟁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 기준의 마련

3. 그 밖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21조의4(피해조사 등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을 지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원 및 제21조의3제8항에 따라 조사관을 지명하는 경우 해당 조사관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에게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를
발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은 농약
피해 조사가 완료된 경우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서류·현장·시험결과·의견
청취 등 농약피해를 조사한
객관적 사실

2. 제1호에 따른 조사 사실을 중
합적으로 고려한 배상 수준
등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객
관적인 사실 입증을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
조사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
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신설>

<신 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illegible]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식물방제업 신고 수리
2. 법 제5조에 따른 수출입식물
방제업 지위승계 신고 수리
3. 법 제6조에 따른 수출입식물

방제업 폐업 신고 수리

4. 법 제7조에 따른 수출입식물
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및 수출입식물
검역소독처리규정 고시 및 운
용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
입식물방제업자 교육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
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검사, 시료·시험용 제품 수거
7.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수출
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수거·폐기 실시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출
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농약
등의 관리사항 보고 요구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출
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신 설>

10.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지위승계 신고

11.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수
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청
문

12. 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
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제5의
2호·제6호·제7호에 따른 과
태료 부과(수출입식물방제업
자에 한정한다)

13.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출입
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
제업 신고 수리

2. 법 제5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지위승계 신고 수리
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 수리
4. 법 제7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및 항공방제업관리
규정 고시 및 운용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
방제업자 교육
6.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
사 등의 운영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
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
함한다) 및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
다)에 대한 검사, 시료·시험
용 제품 수거
8.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
등의 검사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판매

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
함한다) 및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
다)에 대한 수거·폐기 실시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
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
한 농약등의 관리사항 보고
요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
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1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13.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지위승
계 신고

14.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
공방제업자에 대한 청문

<신 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

1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제
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
2항제1호·제2호·제3호
· 제5의2호·제6호·제7
호(항공방제업자에 한정하
다)

나. 법 제40조제2항제8호

16. 제21조제4항에 따른 항공방
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고시

17.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조
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8.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
고포상급 지급에 관한 고시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
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
게 재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은 그 재위임 또는 위탁
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 법 제31조제4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u>한국농업기술진흥원</u>에 위탁한다. 1. (생 략)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 등의 <u>검사</u>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3. (생 략)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u>농촌진흥청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u>항</u>----- -- <u>한국농업기술진흥원</u>----- -----. 1. (현행과 같음) 2. ----- -- <u>검사(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u> --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31조제4항</u> ----- -----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연 락 처	(044) 201 - 1895